

수원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549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5496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23 선고 2018가단59314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국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세환

변론 종결 2019. 9. 4

판결선 고 2019. 10. 16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23. 선고 2018가단593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안산시 단원구 C 임야 34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5. 11.

3. 접수 제1392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안산시 단원구 D 과수원 1,270㎡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5. 11. 3.접수 제139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을 증여등 형태로 피고에게
이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같은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2013.6. 3. 유언공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유언공증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13. 6. 3.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 증서 2013년
제1066호로 원고를 유언자로,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인 L(원고의 장남), M(원고의
삼남),파원고의 딸)을 수증자로 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위 공정증서에서는 C 임야를 L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원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 등부2013년 제2764호로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G, H, N 토지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원고의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부담부증여로서 원고의 생존시까지 부양의 의무를 다한다,본인의 사망 후 남은 예금 및 적금 등은 장례비를 공제하고 4남매가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속한다,후일 본인의 사후에 나머지 자녀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그 사실을 확실히 하여 두기 위하여 이 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공증한다,고 기재된 유언공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는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상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는바,유언자인 원고가 살아있는 이상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1109조),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후에이루어진 생전행위인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이상 이사건 유언공정증서 중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저촉되는 부분은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13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근판사 이환기 판사 정성화